

68년도 제 2 회 임시총회

대한 건축사협회

☆정관개정·추경예산안 통과☆



<總會光景>

本協會는 第2回 臨時總會를 1968年 5月26부터 2日間 建設會館 會議室에서 代議員 137名中 94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하였다.

지난번 제1회 總會가 監事不參으로 因한 監查報告 問題로 유회된 후 개최된 이날 總會는 金鍾植 監事の 監查報告에 이어 정관개정에 들어 갔는데 제안된 안을 축조심의 하였으며(별지와 같음) 현재의 회계연도를 변경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부총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지부총회는 그 후 1개월 내에 개최토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이날 회의를 폐회하였다.

제2일째 회의인 28일에 있어서는 137名中 90名이 출석하였으며 27일 상정된 68年度 추경을 다루었는데 姜大雄 理事의 제안설명에 이어 심의방법에 있어서 1968년도 추

경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8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임원이 있으므로 임원개선을 의제로 상정할 것을 조건부로 하는 동의안이 채택되어 1968년도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 12,766,000원과 특별회계 2,455,000원으로 총액 15,221,000원으로 통과되었다. (이 예산안을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바 지부에 산 일괄표합지시에 따른 수차의 수정 결과 7월 15일에 별지와 같이 승인이 났다.) 이어 상정된 임원개선에 들어가 임기를 둘러싸고 잡론 율박 중에 8월말로 임기만료되는 安仁模, 車景淳 理事와 金鍾植 監事が 사의를 표명하고 이어 姜大雄, 康晉參 理事가 사의를 표명, 이의 수리여부를 묻기 위해 표결에 들어 갔으나 출석 대의원이 재적대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68명이어서 폐기되고 말았다.

1968年度 第一回追加更正豫算額

1968. 7. 16 건설부 승인

會計別	應別	第一回追加更正豫算額	既定豫算額	對比增減	備考
一般會計		28,481,965	8,283,108	20,198,857	
	本部	12,766,000	8,283,108	4,482,892	
	支部	15,715,965	0	15,715,965	
特別會計		2,455,000	1,380,000	1,075,000	
合計		30,936,965	9,663,108	21,273,857	

一般會計歲入

項	目	第一回追加更正豫算額	既定豫算額	對比增減	備考
會費收入		23,811,218	6,832,000	16,979,218	
	入會費	2,400,000	2,400,000	0	
	正會員會費	21,011,218	4,032,000	16,979,218	
	贊助會費	400,000	400,000	0	
事業收入		50,000	500,000	△450,000	
	刊行物收入	50,000	500,000	△450,000	
雜入		9,692	0	9,692	
	雜收入	9,692	0	9,692	
移越金		951,108	951,108	0	
	前年度移越金	28,381	28,381	0	
	前年度未收會費	842,327	842,327	0	
	前年度未收金	80,400	80,400	0	
支部收入		3,659,947	0	3,659,947	
	其他收入	3,659,947	0	3,659,947	
一般會計	合計	28,481,965	8,283,108	20,198,857	

一般會計歲出

項	目	第一回追加更正豫算額	既定豫算額	對增 比減	備考
會議費		984,000	626,000	358,000	
	總會費	340,000	190,000	150,000	
	理事會費	192,000	144,000	48,000	
	支部長會費	97,000	65,000	32,000	
	委員會費	355,000	227,000	128,000	
事務費		7,289,700	4,881,308	2,408,392	
	給料	2,328,000	1,626,000	702,000	
	手當	1,704,100	953,700	120,400	

	旅 費	380,000	100,000	280,000
	交 通 費	64,000	48,000	16,000
	消 耗 品 費	80,000	51,008	28,992
	備 品 費	183,500	50,000	133,500
	通 信 費	273,600	251,200	22,400
	照 明 炭 水 費	135,400	63,000	72,400
	圖 書 及 印 刷 費	270,100	144,400	125,700
	涉 外 費	653,000	340,000	313,000
	辦 公 費	1,000,000	600,000	400,000
	價 借 料	750,000	600,000	150,000
	雜 費	98,000	54,000	44,000
事 業 費		3,162,000	2,026,000	1,136,000
	研 究 費	800,000	800,000	0
	一 般 事 業 費	850,000	350,000	500,000
	行 事 費	50,000	50,000	0
	宣 傳 費	1,100,000	400,000	700,000
	慶 吊 費	230,000	100,000	130,000
	出 版 費	132,000	326,000	△194,000
財 產 造 成 金		285,500	65,000	220,500
	基 金 積 立 金	150,000	65,000	85,000
	退 職 金 積 立 金	135,500	0	135,500
轉 出 金		960,000	600,000	360,000
	轉 出 金	960,000	600,000	360,000
豫 備 費		84,800	84,800	0
	豫 備 費	84,800	84,800	0
支 部		15,715,965	0	15,715,965
	支 部	15,715,965	0	15,715,965
一 般 會 計 合 計		28,481,965	8,283,108	20,198,857

特 別 會 計 歲 入

項	目	第 1 回 追 加 額 更 正 豫 算	既 定 豫 算 額	對 增 比 減	備 考
事 業 收 入		1,495,000	780,000	715,000	
	廣 告 料	1,380,000	780,000	600,000	
	特 別 贊 助 金	105,000	0	105,000	
	雜 收 入	10,000	0	10,000	
轉 入 金		960,000	600,000	360,000	
	轉 入 金	960,000	600,000	360,000	
特 別 會 計 合 計		2,455,000	1,380,000	1,075,000	

特別會計歲出

項	目	第 1 回 追 加 更 正 豫 算 額	既定豫算額	對 增 比 減	備 考
事業費		2,432,100	1,380,000	1,052,100	
	會誌刊行費	1,839,700	1,210,800	628,900	
	郵送費	112,900	68,700	44,200	
	圖書購入費	120,000	0	120,000	
	會員名簿費	160,000	0	160,000	
	印刷費	120,800	60,000	60,800	
	渉外費	67,200	30,000	37,200	
	交通費	11,500	10,000	1,500	
豫備費		22,900	0	22,900	
	豫備費	22,900	0	22,900	
特別會計合計		2,455,000	1,380,000	1,075,000	

建設部承認 68. 7. 15

定款改正案(對 比)(第2回臨時總會) (1968. 5. 27)

現 行	改 正 案
<p>第4條④本協會의 事務所 및 各支部의 事務所는 다음 地에 둔다. 以下省略</p> <p>第21條 ④定期總會는 每年 9月中에 召集한다.</p> <p>第24條 ③總會에서 出席代議員過半數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議決할수 있다.</p> <p>第29條 ①事務所에는 다음의 部署를 둔다. 3. 出版部</p> <p>第31條 事業收入金……本會의 事業에 따르는 收入金</p> <p>第32條 ①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9月1日에 始作하여 다음에 8月31日에 磨勘한다.</p> <p>第33條 會長은 每年 9月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p> <p>第41條 ③定期總會는 每年 10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召集한다.</p> <p>第55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0月 1日에 始作하여 다음해 9月30日 磨勘한다.</p> <p>第56條 支部長은 每年 10月10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p> <p>第4條 ①本協會의 主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각</p>	<p>支部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 釜山直轄市, 및 各道에 둔다. ②支部의 管轄區域과 事務所位置는 別途로 定한다.</p> <p>第21條 ④定期總會는 每年 11月中에 召集한다.</p> <p>第24條 ③定款改正은 出席代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을④로</p> <p>第29條 3. 企劃部</p> <p>4. 事業收入……會誌刊行에 따르는 廣告料, 事業計劃에 따르는 刊行物配付代金.</p> <p>5. 手數料……諸證明 手數料</p> <p>6. 其他收入……其他 雜入</p> <p>第32條 ①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月 1日에 始作하여 同年 12月31日에 마감한다.</p> <p>第33條 會長은 每年 1月31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p> <p>第41條 ③定期總會는 每年 本會總會 後 1個月內에 召集하고……</p> <p>第55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月1日에 始作하여 同年 12月31日에 마감한다.</p> <p>第56條 支部長은 每年 1月31日까지 前年度 財産目錄, 損益計算書,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査를 받아야 하며 다음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p>